

의안번호	2126422
의 퇴 인	이원욱의원
회 답 일	2024.3.8.
추 계 번호	23B01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직접 사용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또는 교통약자를 부양하는 가족이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거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제13항 신설)	의무규정
2	안 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제2항 신설)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제4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규정
1	안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6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2. 상세사유

- (안 제16조제13항 신설)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약자 또는 교통약자 부양가족이 특별교통수단을 구입하거나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구매시 구매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동 규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현재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보조사업(124억원, 2024년) 실시중
 - 개정안에 따라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현시점에 특정하는 데 제한적이어서 관련 비용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16조의2제2항)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재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인 임차택시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택시(사업명: 바우처택시)¹⁾ ‘비우처택시’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별 이용수요와 비용보조 현황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가 곤란하므로, 본 추계에서 제외함
 - － 다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영현황은 [표 1]에서 참고할 수 있음

1)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시민이 이용 가능하나 이동지원센터 요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배차하는 택시임

[표 1]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건)

구분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차량대수	이용실적	차량대수	이용실적
합계	406	1,316,944	14,074	4,201,509
서울	57	168,291	5,382	480,521
부산	—	—	4,700	915,218
대구	—	—	310	1,048,561
인천	—	—	300	634,907
광주	88	275,247	100	31,360
대전	90	309,199	150	54,524
울산	—	—	241	233,732
세종	—	—	0	0
경기	73	338,425	333	245,257
강원	15	27,246	1,716	24,374
충북	23	63,538	54	82,556
충남	—	—	33	70,404
전북	47	95,246	—	0
전남	12	37,595	220	158,746
경북	1	2,157	93	632
경남	—	—	301	115,563
제주	—	—	141	105,154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 (안 제16조의2제4항)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런데, 현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보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범위로 위임되어 있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택시차량의 수, 수요 등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관련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